

Mar 2024. Issue 183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용기

생각과 현실

06 ... 2024년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 드립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09 ... 쟁점물품을 증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 0156)

논리로 푸는 HS 사례

13 ...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의 품목분류

Global Customs Insight

16 ... 베트남의 수책제도 및 정산보고서 제출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0 ... 한·영 FTA, EU산 재료 누적기준 및 EU 경유 직접운송 원칙 예외 규정 연장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3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용기란 무엇일까요?
용기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주소서.”*

작고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집필한 책의 제목은 '용기있는 사람들 (Profiles of Courage)**'입니다. 용기 있는 결심을 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한 8명의 미국 정치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을 용기 있게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존재할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옳다고 믿었던 것을 용기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르거나 자신을 후원하는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 전체의 시민들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 용기 있는 행동들로 인해 고초를 겪고, 정치일선에서 쫓겨나고, 가족들 마저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2024년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 드립니다.'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을 증거나 미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6)' 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의 품목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베트남의 수책제도 및 정산보고서 제출' 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한·영 FTA, EU산 재료 누적기준 및 EU 경유 직접운송 원칙 예외 규정 연장',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입니다.

용기란 무엇일까요? 용기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도전하고 진행함으로써 받을 고통이나 위험, 협박 등에 뒷걸음 치지 않을 숭고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숭고한 가치라는 것이 나라를 구하거나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뿐 일까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주어지는 여러 상황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며 용기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숭고한 가치이며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나와 너' 두 사람만 있어도 사회가 형성되고 작은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와 인류 등을 포괄한 전체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축, 나아가서는 동식물과 무생물까지도 공동체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글자 그대로 '만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크고 작은 여러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세계의 중심은 아닙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전체의 일부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타인'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의 경쟁상대가 아니기에 친구의 행복을 나는 축복합니다. 나에게 대한 집착(self-interest)을 버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social Interest)으로 바꿀 때에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과는 관계없습니다. 당신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이 협력적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말고.'

케네디 대통령이 꼽은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self-interest)을 내려놓은 정치인들입니다. 더 큰 공동체를 위하여 앞장섰습니다. 당리당락을 따르거나 자신을 후원하는 집단의 이익만 바라보는 정치는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갖고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손을 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냉정함과 용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지는 못했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을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부리지 않을 용기 있는 후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용기는 커녕.... 이전투구(泥田鬪狗)만 아니어도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주소서.”* 또한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소서...

감사합니다.

*칼 폴 라인홀드 니부어, [라인홀드 니부어 \(r6 판\) - 나무위키 \(namu.wiki\)](#)

**존 F. 케네디, 용기 있는 사람들, 2001.01.25,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127975>

***기시미 이치로 ·오고가 후미타케, 『미움받을 용기』, 인플루엔셜, 2014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생각과 현실

2024년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 드립니다.

고객사 대상 2024년 신한관세법인의 교육은 ①고객사 초청 월간 교육, ②고객사 방문 맞춤형 교육 ③ 이슈별 연 4회 세미나 개최 3가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 영 진

부대표/관세사
wed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1. 고객사 초청 월간 교육 계획 (고객사 무상, 비고객사 유상)

- 고객사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약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 고객사는 유상교육)

일자 (예정)	교육 주제
○ 부산: 4 월 17 일(수) ○ 서울: 4 월 18 일(목)	FTA 관리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기본 & 원산지 관리)
5 월 22 일 (수)	EUDR, CBAM 수출기업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
6 월 19 일 (수)	원산지 표시제도 및 결정 (대외무역법)
7 월 10 일 (수)	기업의 RISK 관리를 위한 수출입허가 및 승인
8 월 28 일 (수)	관세환급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환급실무 및 이해
○ 부산: 9 월 25 일 (수) ○ 서울: 9 월 26 일(목)	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및 관세법개정안
10 월 23 일 (수)	관세조사 주요 유의사항 교육
11 월 20 일 (수)	관세와 수출입통관 표준업무절차 및 용도세율
12 월 11 일 (수)	품목분류 동향 및 고시 개정사항

2. 고객사 방문 맞춤형교육 실시 (고객사 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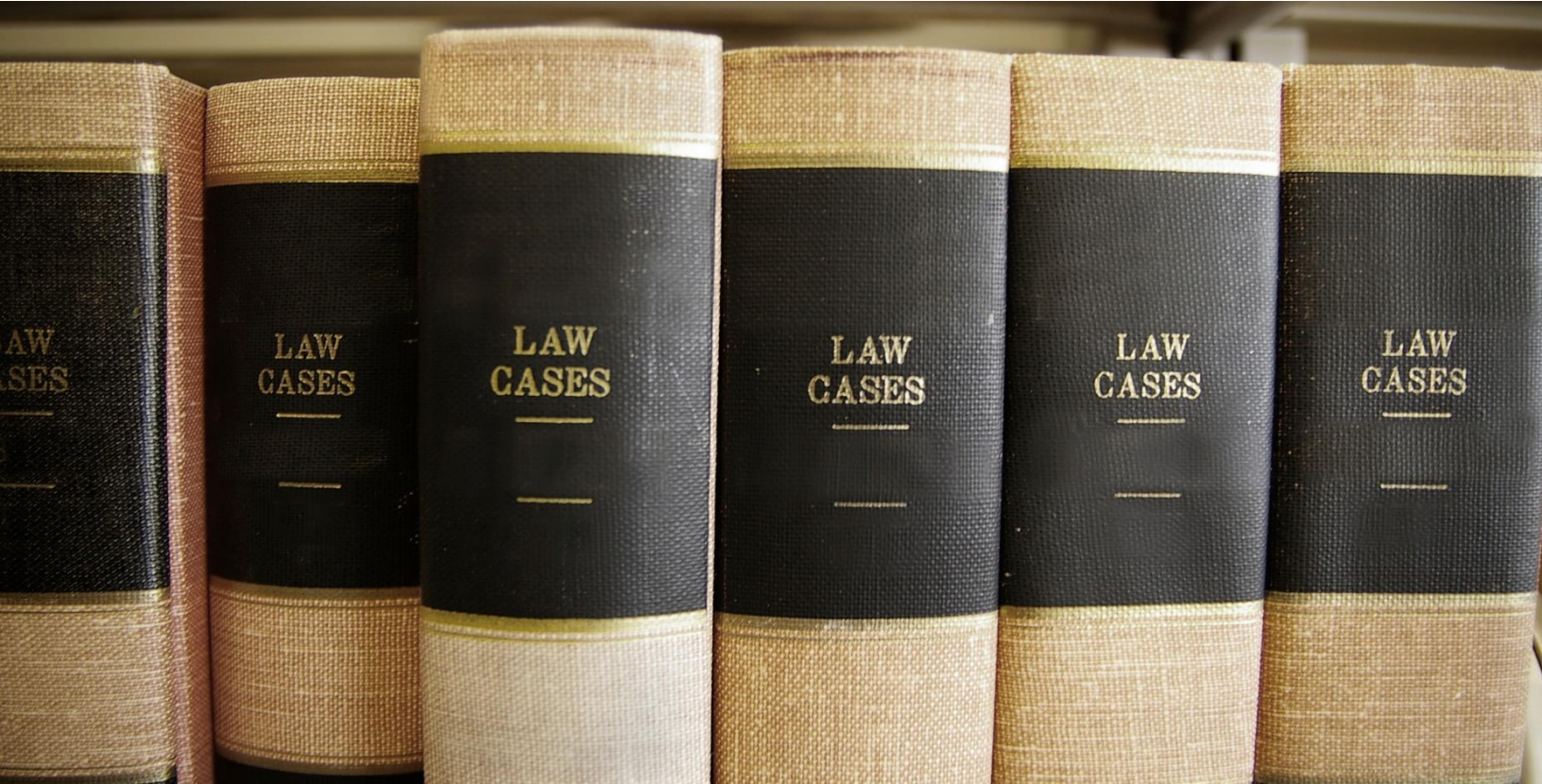
- 기업의 수출입, 마케팅, 회계직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요청할 경우, 교육 2시간, 질의응답 1시간동안 2명의 관세사가 사전에 요청받은 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합니다.
- 사전에 교육자료 작성과 출장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청구합니다.
- 교육요청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제
통관	수출입통관실무, 원산지 규정, 세율, 과세가격, 전략물자, 품목분류, 수출입 허가 및 승인 (식품위생법, 전파법 등) 등
FTA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판정, 원산지관리, 시스템, 검증 등
AEO	공인인증, 사후관리, 종합심사 등
환급	환급절차, 소요량 계산방법 등
심사	관세평가, 이전가격, ACVA, 외국환거래법의 위험관리 등

3. 이슈별 연 4회 세미나 개최 (고객사 무상, 전문가 유상)

분기별로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세측면의 이슈에 대해 적시성있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 2월에는 한미일 해외직구 비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최근 물가불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할당관세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대해 기업의 애로사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6)

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고압 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이하 쟁점물품)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로 보아 8424.30-9000호로 분류하고,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3건 수입하였습니다.

쟁점물품은 동력 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하여 저압상태의 물을 고압[최대 170바(bar)]으로 변환하여 분사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건설현장·건물 외벽·세차장·소형공장·가정 정원 등에서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세척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김 선 응

관세사

sw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처분청은 2021년 9월경 쟁점물품이 '그 밖의 기타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협정관세율 3.2~5.6%)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청구법인 주장 세번 : 8424.30-9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처분청 주장 세번 : 8424.89-9000 그 밖의 기타기기

3) 청구법인은 2021.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제 8424.89-90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였습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424.30-9000호(협정관세율 0%)의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 8424.3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기기'로 보아 HSK 제 8424.8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2관0156 결정문 [쟁점] 2)

3. 판단

가.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6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8424.30호에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기체나 고체의 분사기 뿐만 아니라 본 물품과 같이 액체를 분사하는 물품 또한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보아 통칙 6호에 따라 8424.89호가 아닌 8424.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8424호의 HS 해설서 내용에서 (A)그룹은 8424.10호, (B)그룹은 8424.20호, (C)그룹은 8424.30호, (D) 및 (E)그룹은 제8424.4호 또는 제8424.8

호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고, 제트분사에 대해서는 (C)그룹뿐 아니라 (B), (D)그룹에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단지 제트분사기라는 이유만으로 8424.30호에 분류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8424호 해설서 그룹

- (A)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B)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D) 주수기(syringe)·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
- (E) 관개시스템

나. 8424호 해설서 (C)그룹 (8424.30호 _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서 "이들은 모래·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쟁점물품은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건설현장, 건물 외벽 등을 세척하는 용도의 기계로서, 주된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본 해설서 (C)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본 해설서 (D)그룹(주수기(syringe)·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에서는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D)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 적용되어 관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제논의

본 사례에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쟁점물품이 8424.30호의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로 갈 것인지, 8424.89호의 "그 밖의 기타기기"로 갈 것인지가 양자 간의 주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청구법인은 액체를 고압으로 제트분사하는 기계에 대해, 증기 또는 모래 분사기와 유사한 기타 제트 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통칙 6호에 따라 소호의 용어를 고려하였을 때 8424.89호의 그 밖의 기기가 아닌 8424.30호에 분류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에서는 해설서 상 주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C)그룹의 물품과 상이한 물품으로 보았고, 오히려 (D)그룹의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 8424.89-9000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공표된 쟁점물품과 유사한 'Jet Projecting Machine'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신(8424.30-9000)을 신뢰하여 본 세번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 결정이 2023년에 되어서야 8424.89-9000으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공표되어, 공표 이전 수입된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통관절차 상 품목분류에 있어 세관장을 기속할 뿐 신청인에 대해 직접 공법상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이나 의무에 관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견 단순해 보이나 모호하고 까다로운 품목분류와 관련된 쟁점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판례라 생각됩니다. 품목분류 시에는 **물품 기술적인 특성 및 기능 용도와 더불어 주규정, 호의 용어, HS해설서 및 호의 구성체계와 기존 품목분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록 유사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사례가 있어도 **통관 시에는 해당 동일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내용에 대해서만 기속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겠습니다. 품목분류와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 이전에 미리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HS 품목분류 시 유사물품 또는 기타 세번 분류 기준에 대해, 본 사례에서처럼 호의 용어의 해석에 있어 그 용어 및 포함 범위가 일반적인 용어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의적인 분류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사 상담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의 품목분류

1. 개요

반도체 제조 8대 공정 중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것을 포토공정, 포토공정 후 필수적인 회로부분 이외의 부분을 지우는 것을 에칭공정 이라고 한다. 에칭공정 중에는 에칭기계 내부에 웨이퍼 크기에 따른 챔버를 구성하고, 불순물 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진공상태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태를 위해 에칭기계는 진공펌프 및 이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포함된다.

이번 글에 다루고자 하는 품목은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호, 진공 챔버와 진공 펌프 사이 장착되는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이다.



한 윤 호

관세사

whhan@shc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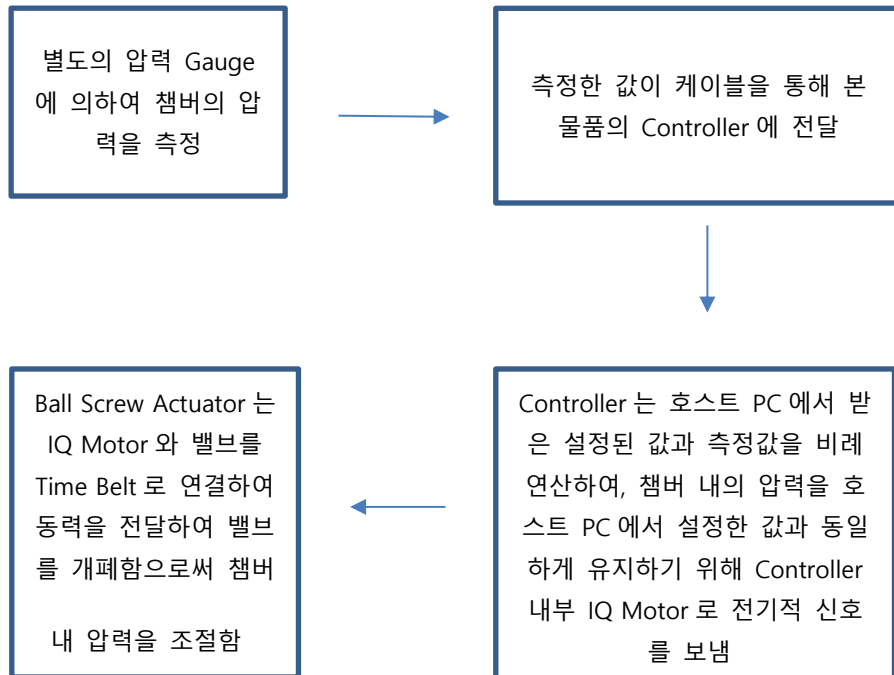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품목분류 검토

(1) 작동방법 (품목분류 4 과-3650 인용)

본 품목은 밸브 바디, 게이트 Assembly, O-ring 등 본체 및 전동모터와 Ball Screw Actuator 로 이루어진 Controller 부가 결합된 상태.



(1) 고려대상 HS CODE

HS CODE	제 8481.80-1010 호	제 9032.20-0000 호
명칭	전기 작동식의 그밖의 밸브	매노우스타트 (manostat)
세율	기본세율 8% WTO 협정세율 13%	기본세율 8% WTO 협정세율 0%

(2) 쟁점 HS CODE 법령상 정의 및 내용

제 8481 호는 밸브 등 이와 유사한 장치, 제 9032 호는 제 90 류 제 7 호에 정의된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된다.

제 8481 호 해설에 따르면 "밸브 등과, 매노우스타트 등 제 9032 호에 열거된 자동조정용기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밸브 등에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나 물품은 제 9032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 9032 호 해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는 a) 탱크의 압력 등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b)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 정지 · 조작 장치로 주로 구성되며...”,

“자동제어용 기기는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 [펌프·압축기·밸브·노(爐 : furnace)의 버너 등]로서 변량을 지정치로 회복하게 하는 기기와 연결되며..., 이 기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식·유압식·압축공기식이나 전기적 조절에 의해 원격 조절되는데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밸브는 제 8481 호 등)”

“압력제어기나 조정기란 기체정류량장치(manostats)로도 불리며, 주로 지시된 압력과 조정해야할 압력과의 비교하는 조절장치 · 제어회로를 조작시키는 전기접점이나 작은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Global Customs Insight

베트남의 수책제도 및 정산보고서 제출

베트남에서 생산, 수출 활동을 하시는 기업들은 매년 초에 회계 재무보고서 및 세관 정산보고서 제출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베트남의 수책보고서 제출 시기(3월 말)를 앞두고, 베트남의 수책제도와 정산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신 중 호

법인장/관세사
jhshin@shcs.kr

[PROFILE]

- 신한베트남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1. 베트남의 수책제도?

“수책제도”는 법상의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해외 기업 유치 및 수출 장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통상 물품 수입시 부과되어야 하는 관, 부가세에 대하여 해당국가(베트남)에서의 수출 될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부 유예된 상태로 수입을 한 후, 제조 / 생산 / 임가공 등에 사용하고, 이후 세관에 보고하여 해당내역을 확정(사후정산)하는 절차로 운영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합니다.

“수책(手冊, handbook)”이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보세 원재료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대장(수불부)”을 칭하는 표현으로, 보세 원재료 납부유예 - 정산 제도를 칭하는 약어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세 관련 법령에서는 수입원재료, 소모품 및 수출 제품의 반출입, 사용현황, 재고상태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부록에 규정된 양식을 통하여 “정산보고서, Báo cáo quyết toán”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거법령 : 38_2015_TT-BTC / 39_2018_TT-BTC)

2. 베트남의 수입세액(관, 부가세 등) 납부유예 제도 유형

위에서 언급한 베트남의 “원재료 수입세액 납부유예 - 정산 제도”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3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p>(1) 출가공기업(EPE)</p>	<p>Exporting Processing Enterprises; Doanh nghiệp chế xuất 관련 법령상의 정의에 따르면, 수출가공지역에 설립 운영되거나, 산업단지, 경제 지역에 수출물품 생산에 특화된 기업을 말하며, 한국관세법령상 비슷한 개념을 찾는다면, "보세공장"에 해당</p>
<p>(2) 임가공기업(GC)</p>	<p>Processing Company ; Doanh nghiệp Gia Công 외국기업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원, 부자재를 수입하여 임가공 / 제조 생산 후 수출하는 기업</p>
<p>(3) 수출제조기업(SXXK)</p>	<p>Export manufacturing enterprise ; Doanh nghiệp Sản Xuất Xuất Khẩu 임가공 계약의 체결 없이, 원, 부자재를 수입하여 제조, 생산 후 수출하는 기업</p>

3. 베트남의 수책보고서(Liquidation report) 작성과 제출

수책보고서는 수출 제품에 대하여 임가공 / 제조, 수출을 수행한 회사, 조직, 개인(EPE 도 포함)이 회계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최초 생산시설을 신고한 관할 세관지국(Chi Cục Hải Quan)에 보고해야 합니다. 통상, 수책보고서는 수출입 통관에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E-CUS 등)을 통하여 베트남 세관의 전자통관 관리 시스템(VNACCS / VCIS)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며, 이 경우 별도 종이서류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역마다 세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책보고서의 구성

수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3 가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코드 연계표 등)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원재료 수불부, Mẫu số 15/BCQT-NVL/GSQL

번호	원료,자재 코드	원료, 자재명	단위	기초 재고	당기 입고	기중에 수입,수출되는 원료,자재의 량				원료, 자재의 기말재고	비고
						재수출	사용 목적 변경 (국내소진, 폐기)	생산용 출고	기타 출고		
(1)	(2)	(3)	(4)	(5)	(6)	(7)	(8)	(9)	(10)	(11)=(5)+(6) - (7)-(8) - (9) - (10)	(12)

2) 제품 수불부, Mẫu số 15a/BCQT-SP/GSQL

번호	수출품 코드	수출품명	단위	기초 재고	당기 입고	기중에 수출되는 제품량			기말재고	비고
						사용목적변경, 국내소진 전환제품량	수출 제품량	기타 출고		
(1)	(2)	(3)	(4)	(5)	(6)	(7)	(8)	(9)	(10) = (5) + (6) - (7) - (8) - (9)	(11)

3) 실제 소요량 보고서(Actual BOM), Mẫu số 16/ĐMTT/GSQL

번호	수출입 제품코드	수출입 제품 품명	단위	원료, 자재				비고
				자재코드	품명	단위	수출품 1단위 생산시 실제 사용되는 원료, 자재량(소요량)	
(1)	(2)	(3)	(4)	(5)	(6)	(7)	(8)	(9)
1	SP A	Áo sơ mi	cái	VI	Vải 100% cotton	met	1,2	
				K	Dây kéo	cái	1	X
				P	Phấn	viên		KXDĐM

- 수책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수책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사용하는 내부코드(Internal Code)와 수출입 CD 코드(E-CUS CODE)가 상이 한 경우 이것을 확인, 소명할 수 있는 연계표가 함께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수책보고서는 회계 장부(Acc. Book 152, 155, 등) & ERP 데이터 등과 일치되어야 하며, 수출입내역(E-CUS data)만 고려하여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 만약 수책보고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60 일까지는 행정처벌 없이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반제품에 대해서는 소명가능한 BOM상의 소요량을 근거로 원재료로 환원하여 원재료 수불부의 수량에 반영되어야 하며, 수출 · 용도 변경된 반제품은 제품으로 간주하여 제품 수불부에 해당 수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수출, 임가공 조건부 수입세액 납부유예 - 정산제도 및 그 제도와 관련한 "정산보고서(수책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다르게, 실제 면세자재의 수입과 수출과정에서는 수출입 신고코드(ECUS Code) 등록만이 필요하며, 수출 선적건별 BOM의 등록이나 소요량의 적정성 입증은 매 수출입시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별 수출입 신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년 1 회 수책보고서 작성 또는 3~5 년 주기 세관 조사시에 제대로 대응이 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세로 수입된 자재와 그를 통해 생산된 제품 등과 관련한 수불내역 및 BOM 정보는 항상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한·영 FTA, EU산 재료 누적기준 및 EU 경유 직접운송 원칙 예외 규정 연장

1. 배경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체결되어 2021년 1월 발효된 한·영 FTA는, EU와 관련된 원산지 누적과 직접운송 예외 규정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3년이 지난 2023년 12월 말, 한·영 양국은 유예기간을 2025년까지로 2년 연장하여 해당 규정이 지속 적용되도록 하였다.



정 동 희

관세사

jdh9410@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2. 관련 조항

(1) 누적기준 (의정서 제3조)

① 재료누적

다른 계약당사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인정공정 이상의 작업·가공을 거쳐 당사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생산국을 해당재료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② 공정누적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후속 작업·가공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누적은 EU에서 수행된 공정 (작업·가공)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③ EU산 누적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즉 '25년 말까지 적용된다.
(원산지 의정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주 1 개정, '23.12.22)

(2) 직접운송 (의정서 제13조)

① 원칙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 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하다.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에서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한다.

② 예외

운송중인 제품은 협정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이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 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시 수입당사국 세관에 의정서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EU 경유 화물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이 인정된다.

<EU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기준>

- A.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이 불인정된다.
- B.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다.
- C. 수입국 세관 요구 시 상기 A, B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즉, '25년말까지 적용된다.

(원산지 의정서 제13조제1항 각주 2 개정, '23.12.22)

3. 기대효과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2024년 1월부터 자동차, 식품, 등 영국산 수입품과 자동차, 2차전지 소재 등 한국 수출품에 고세율의 관세 적용될 예정이었다. 무관세 기간 연장이 기업들의 활동에 확실성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개정이유]

유치대상 물품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에 맞춰 재구성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인 향수 면세범위 상향('24.1.1.) 반영함



강 가 람

관세사

grkang@shcs.kr

[PROFILE]

- 신한베트남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주요 개정사항]

□ 유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전문 재구성(제 17 조)

- 유치대상은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령 변경 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동 규정 내용을 고시로 인용
 - (제 1 호) 법 제 206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물품
 - (제 2 호) 영 제 219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물품

□ 향수 면세범위 상향(제 19 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 48 조 개정에 따라 향수 면세범위를 60 밀리리터(ml)에서 100 밀리리터(ml)로 상향

[주요 개정사항]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제 17 조 (유치·예치 등)	관세법 제 206 조(유치 및 예치)
제 19 조 (면세범위)	관세법 제 96 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상물품 등의 감면) 제 1 항제 1 호 - 시행규칙 제 48 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시행일자]

2024. 2. 15. 9 (관세청고시 제 2024-7 호)

[의견]

관세청은 앞으로도 입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와 마약 및 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을 엄격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음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